

대체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통계청 김해사무소에서는 대체 기간제근로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 11. 1.
통계청 김해사무소장

1. 채용인원

구분	인원	계약구분	채용기간	수당	비고
기간제 근로자	1명	근로계약	2023. 11. 27.~ 2024. 1. 31. (근무기간 변경될 수 있음)	69,230월/일 *표본관리비 등 별도지급	

- * 근무시간은 9시 ~ 18시로 1일 8시간 근무임
- * 사무소 형편에 따라 채용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담당업무

담당업무	업무 내용
경상조사(가구) 및 연간·특별조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조사 업무 수행 · 방문조사 조사표류 작성 · 조사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시스템 입력 · 기타 조사관련 지시사항 처리 등

3.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자격증, 기타점수(응시자격요건 우대), 통계청 경력, 자기소개서, 가점 등으로 평가
 - ※ 자기소개서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면접(2차)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
-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

5점	10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유족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점 부여

5점	10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4. 응시자격(모두 충족)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통계청 김해사무소 관내 출퇴근 및 출장지역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이종취업자가 아니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

5. 우대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른 장애인 우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우대
 -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 다자녀보육가구 :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점 부여

6.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3. 11. 17.(금) 11:00 이후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시: 2023. 11. 20.(월) 09:30 예정
 - 면접장소: 김해사무소 2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1. 23.(목) 17:00 예정
 - 개별 통보 및 동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n>) 합격자 공고
 - ※ 2차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7.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1.(수) ~ 11. 14.(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우 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접수처

담당자	접수처	연락처
김해사무소 정유진	(우: 51004) 김해시 계동로 195 (대청동, 통계청 김해사무소) 2층 경제통계팀	☎ : 055-344-2504 FAX : 055-314-7064

8.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붙임1 참조)
- [필수] 자기소개서 1부(붙임2 참조)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붙임3 참조)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이종취업확인용)
- 해당자만 제출

- 자격증명서 사본 1부

자격증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점수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보안기사, 기타 정보처리관련 기사 수준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	5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타 정보처리 관련 산업기사 수준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기타 정보처리관련 기능사 수준의 국가공인 자격증	1

-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통계청관련 표창(체험수기 등) 내역 1부
-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 북한이탈주민 등 가점 부여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